

第198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10號

國會事務處

日時 1998年12月16日(水)

場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1998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鄭喜卿 議員外21人)(계속)
-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政府)(계속)
- 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政府)(계속)

審査된案件

- 1. 1998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面
- 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鄭喜卿 議員外21人)(계속) 2面
-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政府)(계속) 2面
- 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政府)(계속) 2面

(15시13분개의)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文濟豊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咸鍾漢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본 보고의 보고서안은 이미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의견을 취합한 후 본위원장과 간사들로 구성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에서 오늘 본 보고서를 심의하여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1998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鄭喜卿委員 자구수정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세요.

○鄭喜卿委員 5페이지에 보면 10월30일에 우리가

분규대학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분규대학 감사'라고 그랬는데 강사가 아니라 '관계인사'이겠지요?

○金貞淑委員 '감사'겠지요. 미스 프린트 같아요.

○鄭喜卿委員 '감사'면 말이 되는데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朴承國 위원 말씀하세요.

○朴承國委員 고등교육 사항에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특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 가능한 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를 존중해 달라 하는 것을 지난 번에 넣었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추가해 주시고요.

학술진흥재단에 62명의 연구과제심사위원과 62명의 학술연구평가위원의 특정대학 편중선정을 지양하라 하고 학생수나 교수수에 비례하여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수나 학생수에 맞추어 62개교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만 첨가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朴承國 위원님의 말씀을 첨가하기로 하고 당위원회의 1998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鄭喜卿 議員外21人)
(계속)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政府)(계속)

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政府)(계속)

(15시17분)

○委員長 咸鍾漢 의사일정 제2항 鄭喜卿 의원의 2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인 黃祐呂 위원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黃祐呂 법안심사소위원장 黃祐呂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지난 12월11일 및 14일 2차에 걸쳐 朴承國 위원, 李在五 위원, 盧武鉉 위원, 鄭東泳 위원, 金許男 위원 그리고 본위원과 국회와 교육부 관계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金顯煜 의원, 咸鍾漢 의원의 36인이 제출한 영재교육진흥법안, 鄭喜卿 의원의 21인 및 金許男 의원, 朴承國 의원, 鄭喜卿 의원의 30인 그리고 정부가 각각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3건을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사회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鄭喜卿 의원의 21인이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제28조 재산관리와 보호중 교비회계 전체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교비회계가운데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에 대해서만 압류하지 못하도록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金許男 의원과 鄭喜卿 의원, 朴承國 의원의 30인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제32조 각호중 학교발전기금에관한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기타 각호에 대하여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자문기구화하고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만 예외적으로 의결기구화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단서조항인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이하의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인 또는 5학급 이하의 학교에 두지 않도록 본 법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제11조의2 수습교사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신분보장 양면을 고려하여 부적격 교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7조의 정년에 대하여는 朴承國, 李在五, 黃祐呂 위원은 현행대로 하는 안, 盧武鉉, 鄭東泳 위원은 정부안으로 하자는 안 그리고 金許男 위원의 63세로 하자는 절충안이 제기되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영재교육진흥법안,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는 바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하여는 교육부가 다음 회기중 상임위원회에 영재교육에 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제38조의2 교무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정리 및 안 제32조의2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편입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사회교육법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교육법 심의시 같이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제21조 제4항의 공익대표를 분규가 발생한 대학에만 두는 안을 마련하여 추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12월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 제32조 중 제1호, 제2호,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는 바 이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그 동안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특히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정신과 교육개혁의 근

본취지가 조화된 법안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黃祐呂 소위원장 그리고 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위원장!

○委員長 咸鍾漢 예, 말씀하십시오.

○盧武鉉委員 심사보고서 안전별 보고에서 셋째번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제11조의2 수습교사제에 관해서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추후 보완하기로 하는 것까지는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삭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계속 심의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李在五委員 원안은 삭제하기로 한 것이지요.

○朴承國委員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盧武鉉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源馥 위원 말씀하세요.

○李源馥委員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을 본위원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동료위원들간에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명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치르는 기간동안에도 많은 의견들이 그동안 나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불필요하게 학교운영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통념상, 언어통념체계상 말하자면 낱말이 주는 어의, 의미론상으로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다 운영책임자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 자체가 사회적으로 관여치 않는 제3의 사람들도 학교운영위원장할 때에는 마치 저 분이 교장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도 받게 되는 명칭입니다.

학교운영의 책임은 분명히 학교장에게 있고 재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적, 사법적인

책임들을 학교측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불가분 이 점에 있어서의 용어가 주는 권력적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가 원래 이것을 입법했을 때 당시의 본 취지가 학교에 있어서의 여러 참여계층들이 다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서 의견수렴절차기관들을 좀 가져보자, 다양한 애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해 볼 수 있는 수렴기관장치를 만들고 거기서 비교적 합리적인 애기들을 한번 걸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그 의미를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의가 맞다면 이 기관의 명칭은 학교운영위원회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발전위원회로 하는 것이 저는 그 대안으로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학부모이나 학생이나 동문이나 그 주변의 사회 각계인사들도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만들자고 해서 의견내는 것이고 좋은 학교 운영하자는 데에 대해서 의견내는 것이지 내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이 용어는 사회적 언어의 통념체계상에도 이것은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안되는 내용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는 우리가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발전위원회로 용어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貞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貞淑委員 방금 학교운영위원회 명칭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토론을 더 하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국정감사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선다는 일념하에 학운위설치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을 다니면서 전부 다 토론을 했기 때문에 공감도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또 지난 번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회의 들어가기전에 대체토론때도 발언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학운위설치는 자율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심의기구였던 것을 자문기구로 성격을 돌려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문위원을 무엇때문에 이렇게 의무조항으로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의견을 존중해서 따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왕에 우리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로 성격을 바꾸신 것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키(key)가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학은 정관에 예시한 대로 정관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지역사회대표들이 뽑혀서 들어와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국·공립은 학칙에 의해서 그리고 사립은 정관에 예시된 대로 정관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싶습니다.

아니면 원래대로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던 조항을 살려주든지 저는 이대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자문기구가 계속해서 사립이고 국·공립이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구성에 있어서는 사립은 정관에 따라서 그리고 국·공립은 학칙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거듭 부탁을 드리고 교원정년문제에 있어서 제 의견을 조금 더 피력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교원정년문제를 가지고 지상에서 읽은 대로 라면 마치 교원들의 자존심을,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는 이런 처사를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원들이 지금 정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유지차원이 아닙니다. 교원의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교원우대정신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우리 교육이 이렇게 교원들의 정년을 놓고 엇가락처럼 늘였다, 줄였다 심지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당위원들이 의견을 달리 한다고 그래서 교

체를 했다가 몇 시간만에 원상대로 돌렸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말살시키는 이런 권력이 과거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저는 교육위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번도 위원을 교체해 가면서까지 어떤 안에 대해서 밀어부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교육위를 무시하고 자기 당의 의견조차도 조율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61세, 내일은 60세 또 들으니까 62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교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같은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원정년문제는 본위원이 여러 번 교육위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원의 자질향상도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교육의 질적인 향상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을 이렇게 무우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일평생 교단에서 고생하고 경륜을 쌓았던 전문적인 교원들을 일시에 교직에서 내모는 이런 방법보다는 명예퇴직제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합리적인 평가방식도입 그 다음에 연수 제도를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정년을 정말 교원들을 우대하는 정신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을 보면 통일을 이루지 못 했는데 현행대로 65세로 고수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薛勳 위원!

○薛勳委員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金泳三 정권때 교육개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학교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그 정신을 일정부분 이어서 교육개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잘된 장치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에 설치하고 난뒤에 학교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비리라든지 부조리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졌고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주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

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학운위 현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에는 일부 중복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서는 사립학교에는 의무규정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자고 이번에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저는 법안심의할 때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원래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기구로 하고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단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에서 자문기구화하는 것이 원래 법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전부 다 국·공립도 다 자문기구화하는 듯한 이런 조문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공립은 기왕에 있었던 대로 심의·의결기구로 그냥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 한해서 자문기구화하는 안으로 조정을 새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소위에서 논의한 부분을 한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라구요.

교원정년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교육부의 안도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통일된 안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는 다행스럽게도 모든 안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원정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야간에 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 충분히 합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견을 더 조율을 해야 할 것 같고 金貞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이 교원정년단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이 부분도 논의를 하면 어떤 합의점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을 내리지 말고 논의를 좀더 하고 우리 간사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축약한 뒤에 이 문제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3당 간사간에 논의를 한번 할 것을 제안합니다.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하십시오.

○金貞淑委員 薛勳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교원정년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는다 또 자당의 당

론을 밀어부친다 이런 말들, 표현자체가 예의가 아닙니다. 송구스럽지요.

60세이상이면 다 그래도 그 당시는 아주 탁월하게 우수했던 분들이 교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일평생 그 분들의 노력으로 정말 우리 나라가 이만큼 이나마 잘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교직의 어른들을 놓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전부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가려는 추세인데 왜 우리 나라는 거꾸로 내립니까?

그리고 IMF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다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교권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느냐 하면 아침신문을 보면 인천에서는 여중생 2명이 여교사를 폭행을 하는 사태가 나는가 하면 또 수원에서는 학부모가 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때리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신문에는 송파구에 있는 모여고에서 교사가 학생 좀 뺨 한 대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112 신고를 해가지고 실어가버렸어요. 이렇게 교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교직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가 있는나 하면 작년이래 지금까지 새정부 들어서서 이날까지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교육부의 교원정책으로 일관된 것입니다.

이 교원정년까지고도 몇 달째 이렇게 엇가락 놀리듯이 했다가 또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 하는 이런 대한민국 교육전체가 이렇게 기본에,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교원정년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정치적인 뒷거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나머지 현행대로 갈 것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당리당략에 의한 뒷거래라는 말은 좀 심하시고 우리가 뒷거래……

○金貞淑委員 언론에서 지금 다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교원정년을 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朴承國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제장에 보면 안 제19조의 단서조항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의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그날 소위원회에서 교감을 두지 아니한다 하는 얘기중에 가장 소위원들이 부탁했던 말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퇴임을 할 시에 교감이 될 수 있었던 분은 반드시 퇴임시에 교감으로 예우하여 퇴임시킨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꼭 기록에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률중개정법률안에는 21조4항에 3분의 1이상 공익대표를 분규가 발생한 대학에만 두는 안을 마련하여 추후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분규가 나서 한꺼번에 임시이사를 내려보내니까 철수하기가 대단히 힘이 든다 그래서 3분의 1만 내려보내고 더 심화되면 다 내려보내고 다 내려보냈을 때 다시 철수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25조에 3분의 1 임시이사를 내려보낸다 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추후심사한다니까 괜찮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안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 안대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주요현안을 한건 한건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우선 전체적으로 黃祐呂 심사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데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말씀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건 한건 심의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의사진행말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예.

○**李在五委員** 소위에서 3당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중에 제일 쟁점이 되는 정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薛勳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위에서 무슨 안을 두고 여야가 견해가 다를 때 끝까지 3당 간사간에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시다. 이 정년문제에 대한 입장이 3당간에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3당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개정안으로 제출한 60세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가 60세안으로 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

에서 가부간 표결을 통해서라도 가든 부든 결말을 내고 그것이 가든 부든 결말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러면 재개정안을 65세로 하느냐, 63세로 하느냐, 64세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안이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교육부에서 정부안으로 60세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가부는 오늘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수정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안의 60세안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는 李在五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안은 여당안입니다. 여야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자는 이야기니까 일단 한 번 더 여야간에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안만으로 우리가 가름하기는 어려우니까……

○**李在五委員**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소위에서 올라온 안을 심사한 것은 정부가 제출한 60세안입니다. 절차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60세안을 놓고 가부를 토론을 한 것이지 61세나 62세나, 63세, 64세 이것을 놓고 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정부가 올린 60세안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회의가 언론보도를 보면 '61세다' 이렇게 또 안을 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회의의 안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매듭을 지어야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薛勳 위원님, 말씀하세요.

○**薛勳委員** 법안개정안을 낼 때 정부안이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고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 그 자체를 하나 놓고 이것은 부정해 버리고 새로 만들자 이런 예는 없으니까요 그냥 60세안으로, 정부안으로 놓고 정부안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60세안을 놓고 뭐 부결을 시키자, 어찌자 이것보다는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李在五委員** 내가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3당간에 합의가 안 되는 안을 놓고 장시간 왈가왈부하기 보다 하나하나를 매듭지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수정안이 지금이라도 나오면 저는 좋습니다. 나오면 얼마든지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전 내

내 3당간에 논의를 했지만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자 이런 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매듭을 지어놓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薛勳委員 수정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당 간사간에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朴範珍委員 이것은 계류시켜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하고 관계없이 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鄭喜卿 의원의 21명이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비회계 전체에 대해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에 대하여만 압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제가 직접 못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문이 있느냐 하면 교비회계 가운데는 기부금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기부금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단이 전입시킨 돈이 아니고 기부금도 교비회계에 편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은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鄭喜卿 의원등이 내놓은 교비회계 전체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료하고 기타 납부금에 이렇게 한정해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가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교감을 두지 않는 소규모학교 그 규모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구만요.

‘100인 또는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본 법에 명시하기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정부안대로 채택을 한 것 같은데 이왕 교감을 두지 않는 기준을 둔다고 그러면 5학급보다는 조금 기준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5학급의 경우에 교장이 지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朴承國委員 1년에 333억입니다.

○朴範珍委員 예산액입니까?

○朴承國委員 예.

○朴範珍委員 그 예산 중의 대부분은 월급이구요. 월급 지급하는데 꼭 교감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 교감을 배치하는 기준이 5학급보다는 좀더 강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鄭喜卿委員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예, 말씀하십시오.

○鄭喜卿委員 제가 법률에 소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비 압류의 문제를 왜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지를 잘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때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학교교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독립된 회계입니다. 재단하고는 이미 연을 끊은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학교에다가 전입을 한 돈이, 빛진 학교에서 얼마나 주었겠습니까마는 일단 학교비로 편입된 것은 그 학교비가 있어야만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낸 돈 그것만 못한다, 하게 되면 교육이 지금 기부금 말씀도 있으셨습니까마는 학교교육이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강조한 것이 교비는 교육을 위해서 독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든, 기부금으로 들어왔든 재단에서 전입을 해 들어왔든 이것을 차압을 하면 교육이 지장을 받는다, 그런 뜻에서 저는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법률적으로 이 아이들의 수업료 이외에는 다 차압이 가능한 어떤 그런 범조항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저도 박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5학급으로 할 때에, 이것도 교권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교감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교직을 떠나야 하는 교원들의 가슴이 매우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살펴주셔야 됩니다. 배치도 못 되어보고 그만 두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5학급은 교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퇴직을 할 때에 때로는 다른 직장에서는 군인 같은 데도 그렇고요. 오히려 승급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격을 퇴직시에 인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법적인 보장이 가능하다면 6학급이나 7학급 이하는 저는 교감이 따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는 행정업무 아닙니까? 선생들을 감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교육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학급수를 늘려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고 단지 이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이러한 조치를, 아까 어느 분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건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 학교 외에 있는 교육관계단체들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성명서 내지는 보도자료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인, 형사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의결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자문기구로 갔던 것은 참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뭐 수구다 무슨 갖은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들이 많습니라마는 어떤 논리로도 교육의 근본적인 주류는 흐트러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에 얼렁뚱땅 된 것 같은데요. 초·중·고등 사립학교에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표성을 앞세운, 대표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선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공립학교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장관님께서 관장을 해야 할 문제이지마는 사립학교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사립학교에서 어떤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분란과 갈등과 분규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법적으로 대항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의한 교사대표, 선거에 의한 학부형대표 이런 방향으로 구성요원을 사립학교에도 강요한다면 이것은 분규가 일어날 것은, 갈등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훤히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다시 법안소위에서 연구를 하셔서 정말 교육을 조화 있고 갈등이 없는,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은 창조적인 생산적인 갈등이어야 될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육계에서 경험했던 파괴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이러한 갈등구조로 가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鄭喜卿 위원님과 朴範珍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5학급 이하 100명 이하에는 교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골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말이지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그 학교의 61%가 문을 닫든가 교감이 없든가 통·폐합을 하든가 이래야 됩니다. 이 문제는 또 심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정 규모를 여기다 못을 박지 마시고 차라리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드려서 일임한다든가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더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이면 몰라도, 교감도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교감이 수업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강원도 같은 데 가면요, 이것으로 적용을 하면 내년 되면 70%가 될지 80%가 될지 몰라요. 시골학교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鄭喜卿 위원께서 학교의 교비문제, 교비회계 전체가 아니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소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薛 勳委員 내가 질의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비회계 전체에 관련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취지 자체가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립학교 중에는 기채를 해야만이 학교운영이 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지금 수업료나 납부금 말고 다른 수입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은 학교에서는 기채조차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을 돕겠다고 한 장치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기채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한 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과연 현명한 장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5학급이하만 해도 1,430개교입니다. 거기에다가 연간 3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하면은 과거처럼 6

학급, 7학급하면 이 숫자가 엄청스럽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1,430개교……

○**朴範珍委員** 학교를 두는 것은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학교를 두는 것이 교감을 두기 위해서 학교를 둘니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감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교감을 두기 위해서 학교를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본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정규모에는 적정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적정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거기는 승진기회가 없으니까 승진기회를 무조건 두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朴承國委員** 5학급이고 100명의 학생 이하라 하면 소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이 한 분 계셔도 수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연간 333억이라는 돈을 절약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範珍委員** 제 생각에는 한 6학급 정도로 조금 강화했으면 합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세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문제는 여러 해 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저희 정부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신축성을 두자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소규모학교인데 같은 100명이라도 아주 오지에 있는 학교는 교감이, 가령 강원도 어디 산골에 그런 학교가 있다 그러면 교장이 계시는데 교장이 갑자기 유고가 된다면가 이런 경우는 학교를 이끌어갈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또 오히려 교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가본 어느 학교는 학급이 6학급인데 학생이 1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사하고 교직원 합쳐서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당 학생이 8명꼴밖에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는 어떠냐 하면 교직원의 인건비가, 그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떠냐 하면, 그 동네 학생들 전부 서울에 가서 하숙을 시켜도 그 인건비 가지면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또 잘못

된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명이하, 5학급'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도교육감님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小委員長 黃祐呂** 소위원장으로서 조금 경과를 말씀드리고 또 토의를 하시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가운데 교비회계 전체를 압류해야 되느냐, 수업료 및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에 한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사소송법에 압류금지물의 규정의 원칙을 보면 최소한도로 압류금지물의 범위는 한정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薛勳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교비회계 전체를 압류금지물로 할 때에는 현행상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학에는 교비회계 운영수입의 69%가 등록금입니다. 약 한 70% 가량이 등록금이고 학교법인 총수입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상당한 교비회계의 70%가량은 이것으로 보호가 되는데 그러면 30%를 더 늘리자, 충분히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사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부금까지 할 때에는 유동채산을 담보로 해서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현실론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수정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논의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적절한 범위내에서 다시 재수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지금 교육부 원래 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그러나 이것은 법률사항이 아니냐? 어디까지 교장, 교감을 둔다는 대원칙을 수정하는 것일 때에는 역시 어느 정도 기준을 법률에서 만들 수 없겠느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결과 대체로 100인 또는 5학급 이하의 학교로 한정하면 적정하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감승진에 대한 교사들의 의욕이나

기대감에 대한 상실성때문에 교직이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문제때문에 朴承國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후속조치를 다른 공무원에 준해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부연해서 논의가 되었고 또 100인이나 5학급이나 이러한 것으로 적절하게 두 가지 기준을 두어서 운영한다면 적절한 선으로 제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경우에 따른 것을 모든 것을 예상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만은 그럴 경우에는 교사지위에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행정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입법부에서 선을 그어준다 라는 점이 이렇게 규정하게 된 근본 원안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압류금지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추가개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과의 조정도 거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본다고 소위로서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喜卿委員 법안소위 위원장님, 제가 말귀를 못 알아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어 봅니다.

아까 '교비 전체를 차압을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기채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말하자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이겠지요. 그것은 교비에 안 들어가 있는데……

○小委員長 黃祐呂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것만 가지고 할 때 대개 부동산에는 저당이 잡히거나 이렇게 해서 이미 다 기채가 이루어졌는데 급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교비가 중요한 가담보물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한하는 범위인데 지금 등록금이 교비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0%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제2의 담보물로서의 가능성을 두자는 것이지요.

○鄭喜卿委員 특히 사학이 문제인데요 사학의 비리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는 길은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비리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학교까지 무더기로 넘겨지는데 학교의 교비가 저당 잡혀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학교의 교비는 그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재단이 더 많이 대주면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70%나 육십몇프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그것까지도 도저히 교육이 안 되니까 다른 돈으로 메워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당도 잡혀서는 안 되고 차압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0%의 돈이 있을 때 그 학교의 교육이 정상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빼 버리고 70% 가지고 학교교육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냈는데 법률적인 것은 그 이상 모르니까 제 고민은 그랬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小委員長 黃祐呂 존경하는 鄭喜卿 위원님의 입법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이 많이 공감했는데 교육부와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그것은 특히 기부금이나 이러한 최소한도의 교비회계 중에 수업료 기타 납부금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해서 의안을 만들었으니까 적절하게 토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喜卿委員 기부를 할 때에는 교육을 위해서 기부했지 빚 갚으라고 기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盧武鉉 위원,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함께 심사했고 함께 보고 했습니다만은 처리는 하나하나 안건별로 나누어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토론보다는 기다렸습니다만은 대체로 여러 개가 묶여서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묶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나누어서 처리할 때는 또 필요하면 토론을 새로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토론을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교육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래서 교육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또 교육이 잘못 가는 것이 있으면 잘못 가는 교육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 국회의 고유기능인 감시기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본지라서 여러 가지 가치중에서도 교육문제에 관한 가치를 우선해서 사고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 국가행정이나 국가정책이 교육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여러 개의 가치를 놓고 서로 이익이 충돌하고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균형을 잡아나가고 그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종합적인 정책들을 함께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이지만 교육만 갖고 '교육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를 놓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누가 옳다 그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사실 압류금지채권을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교육의 가장 기본인 것은 그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일반적인 룰입니다.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룰인데 돈을 빌린 자는 물론 갚아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교육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본원칙입니다. 어쩌면 최고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갚아야 됩니다. 부득이 못 갚는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학생들이 학습권에 피해를 입는 일 또한 막아주어야 하는 그런 교육적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자칫 '빌린 돈은 갚아야 된다' 라는 대원칙에 훼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빌린 돈은 갚아야 된다는 대원칙과 그 원칙만 적용해서는, 보호해야 될 다른 법과 충돌할 때 절묘하게 압류금지채권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 경우도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알팍한 얘기 같습니다. 정말 교육기관을 계속 개설해야 되고 계속 사학을 더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수급의 차원에서조차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될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학교에 특권을 주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급이 맞고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정부와 국가의 부담으로 많은 것을 감당해 나가고 이제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수요·공급이 안정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줘줘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우리가 고심 끝에 내린 그런 소위의 결론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을 만들어가는 제 과정이 엄밀하게 정확한 수치들을 파악해 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적절하게 의견을 절충해 나가는 과정이고 타협해 나가는 과정인데 소위라

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에서는 논리적 토론보다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을 비교·교량해서 적당한 선에서 정해 나가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소위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 아니면 또 여기에서도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이런 의견이 서로 갈리면 소위의 의견 같은 것을 존중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가는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에 관해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명과 실이 딱 부합하면 참 좋은 것인데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거의 모든 경우에 이름이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파고 들면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명칭이라는 것이 붙이기 어려운 것인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름을 바꾸더라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한쪽은 자기들의 권리나 요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나오지 않았던 하나의 명칭을 가지고 국회에서 그것을 수정하게 된다면 각 이해집단 사이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과연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명칭을 우리가 토론을 하면 그것 또한 끊임없는 토론의 토론을 반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는 두고가면서 토론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교권의 문제입니다.

학교운영에 관해서 운영의 근본적인 책임은, 사학의 건학이념이라든지 교육방향에 관한 큰 틀은 재단이 결정하고 일상적인 학교운영은 학교장의 권한에 맡겨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재단과 학교의 교권을 지켜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과연 교권 하나만으로 되느냐? 교장선생님의 권한만 강화하고 그 분들의 인품과 역량, 그 동안에 기여한 업적 이것만 신뢰한다고 우리 교육이 과연 잘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범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교육에도 수요자개념을 한

번 도입해보자 교육에도 경쟁이념을 한번 도입해보자 그러면서 교육의 효율화를 기해보자 그러면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뼈대는 유지하되 바뀌야 할만한 부분들은 크게 바꾸어보자 그런 것이 94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제1차 교육개혁안이고 제2차, 3차, 4차에 걸쳐 가지고 전정권에서 다 다듬어지고 금년 2월 정권을 마지막으로 인계하면서 지난 2월에 교육개혁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집대성해 가지고 자료로 묶어서 이 새 정권에 넘겨준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불쑥 솟아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기존의 교육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들에 조금 변화의 바람을 넣어보자 또 민주적 바람을 여기에다가 넣어보자 라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 정권이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해왔던 것이고 운영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 참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부분을 지금 우리가 폐기하거나 축소할 단계까지 왔는가? 그렇게 어렵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개혁안의 중요한 핵심부분의 한 내용인데 그 동안의 시험결과가 폐기해야 될만큼 그것이 실패로 증명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운영위원회 부분은 살려나가야 하고 사립학교에도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문제를 놓고 교권을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균형잡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애정이 표현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년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년문제도 느닷없이 교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거대한 하나의 개혁의 열풍과 변화의 열풍속에 휩싸여 있고 나이 30세가 된 사람도 수만명씩 길거리로 아무 대책없이 쫓겨나고 있습

니다.

명퇴수당이라도 제대로 받는 사람은 그나마 혜택받은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명퇴수당이니 뭐니 할 것 없이 열풍이 불어나가고 있는데 이것과 교육이 꼭 같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상호 경제논리를 가지고 '교육은 예외다. 경제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회흐름으로 크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이 흐름속에서 우리가 정년문제를 논할 때 해당되는 선생님들의 적어도 경제적 이해문제만은 한번 접고 얘기를 해야 한다.

물론 상임위에서 경제적 문제를 내세워서 이것을 반대하고 토론하시는 위원님들은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교원의 사기와 교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교권이 깃뻛히고 있다 이런 얘기중에 학부모가 선생을 폭행했다 이런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는 인과관계가 직접 연결되는 범주를 정확하게 연결시켜 나가야지 그렇게 마구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이런 논의는 누구나 다 감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교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을 저희도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학부모가 와서 폭행하는 이것은 한 둘 있는 예외적인 상황 이것으로 모든 선생님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너무 확대한 것입니다.

만일 거꾸로 얘기한다면 학교 선생님중에 학생들한테 파렴치한 짓을 한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파렴치하다고 말하면 선생님들이 가만히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적어도 정년문제를 포함해서 이 교육개혁안이 학교를 흔들고 교권을 흔들고 그야말로 아무 명분도 논리도 없이 교육을 흔들어놓은 주범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 상위에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서로 교권을 좀 더 높이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좀 더 높이고 교육을 좀 더 보호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뭔가 변화를 주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자는 어떤 타협과 논의를…… 이것을 뒷거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관점을 고쳐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자, 교권은 교권대로 교사의 사기는 사기대로 우리가 존중해 나가되 그러면서 또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교육개혁의 실을 살려나가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것을 함께 토론해 나가고, 이것이 양단간의 문제가 아니라 절충도 가능한 문제라고 봐야 하고, 적어도 교육부에서 보거나 저 개인의 경우에서 볼 때 60세보다 좀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쪽에서는 선생님들로부터 ‘다음 선거에 조직적으로 당신 낙선운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한 쪽에서는 ‘60세보다 더 낮추라’ 이런 요구를 수 없이 듣고 있고 여론조사도 저희가 해가지고 듣고 보고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서로의 가치가 충돌되고 서로의 의견들이 충돌될 때 절충하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盧武鉉 위원님! 심사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서로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李源馥 위원, 말씀하세요.

○李源馥委員 제가 아까 발언신청한 것은 의사진행발언 조금 할까 해서 신청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盧武鉉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길게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말씀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을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비교적 소위원회에서 나온 결론들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나서 Skip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나름대로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 위원님들 간에 큰 대차 없이 수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법률적인 통과에 대한 처리들을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委員長 咸鍾漢 일단 의견 들은 다음에 할게요.

○李源馥委員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것이 대통령령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학교장이 현행법 체제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학교운영위원장 밑에 들어가도록 형식적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넘어오게 된, 부분적으로 다 합의가 안 되어서 전체토론을 기다리고 있기는 합시다마는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은 일단은 자문기구화하는 것까지는 합의된 상태거든요.

그래놓고 보면 당연히 대통령령에서도 시행령에서도 자문기구화한다고 했을 때 자문을 받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장과 재단, 특히 교장의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자문하는 기구의 평위원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언발란스해 보인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법안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행령상에서는 꼭 그것은 미리 전제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해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문제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의 그 순수한 의도랄까 교육사적 의미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많지 않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적에도 보면 이것이 과거에 개별 위원에 따라서 정치적인 체험들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쪽 야당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여당으로 계실 적에 도입했던 제도라는 말입니다. 이 제도 처음 도입될 당시에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조금씩 사적 체험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같은 경우도 일반시민으로서 바라볼 적에 이 제도 처음 도입당시에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본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의에 충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혼란스러운 요소들이 있다면 교통정리를 해 줄 필

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싶습니다.

아까 명칭문제가 사회적 통념의 언어체계상에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재고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문과 심의와 의결에 관련된 것도 정리가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고 봐서 그 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자문기구의 성격으로서는 잘 정리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이의제기 않고 더 말 안하고 있는 것인데 왜 자문기구로 잘 되었다고 보는 것이냐? 학교운영의 행정적·법적 주체는 일단은 잘하든 못하든 명확하게 학교의 재단과 교장단이다 이것입니다.

잘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사나 학부모이나 동문회 대표나 또 지역사회 인사들 경우에는 더 학교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가 잘못되는 것을 예방 내지는 감독한다거나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자문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양자간에 얼마든지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 체계가 잘 되었다고 보아서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의견 가운데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은 정회를 해서 3당 간에 다시 한번 스크린해보기로 하고 어느 정도 이견이 없는 것은 선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셔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金貞淑委員** 정회하기 전에, 우리 盧武鉉 위원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교육이 잘 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쪽도 그렇고 교육도 이상한 것은 일본것을 따다가 해요. 이 학운위도 전 정부가 해놓았던 것이지만 잘된 제도는 아닙니다. 제가 평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본에 평위원제도가 있는데 거기 것을 지금 따다가 해놓은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 사립학교는 사학의 자율성을 많이 인정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문기구로 해놓고 구성도 이사

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학에 대해서 사학은 형사적인 책임도 교장이 지고 민사적인 책임도 이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다 무슨 위원회가 와서 아무리 무슨 결정을 하고 따라가서 일을 하다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 총책임은 결국은 학교 소유했던 이사장이나 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기구 성격이 짙게 해놓아야 되고요.

전 정권에서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때, 사학에는 자율로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 법안이 이미 자유조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많은 손해를 주면서…… 그 동안에 학운위가 없는 학교에는 돈을 안 준다든지, 학교발전기금도 못 모으게 한다든지, 또 교육감 선거할 때도 거기서 나오라고 하고…… 학운위 구성을 교육감 선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강압적으로 몰아가면서 이것을 강제로 하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고 더 실시해봐야 됩니다. 우리 盧武鉉 위원님 주장을 하시는데 더 실시를 해봐야 알아요. 아직 평가하기는 일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문기구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자율로 이대로 놔둬라, 그리고 자문기구로 할 때에는 더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만들어서 위촉을 하든지 이런 것을 넣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큰 차이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교육의 본질적인 것, 예를 들어서 교육방법이나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이런 교육의 본질적인 것부터 개혁을 하려고 안하고 지금의 정부의 개혁은 외곽적인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교원을 교육개혁 대상으로 하면서…… 아까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한 것은 교원정년만 갖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교원의 사기 꺾는, 교원의 기를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스승인증제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촌지교사들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교원들이 창피스럽게 제자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교권을 잃어버리는 정책을 많이 남발을 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간에 신뢰가 없고 교권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런 총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지, 교원정년가지고 이러니까 그런다 하는 얘

기는 제가 안 했고요.

본위원이 어느 날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더니, 지금 나이든 교사들이 문제라고 교육부의 모 국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든 교사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짝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개혁의 대상을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 교육개혁은 나이든 교사들을 짝 없애려고 하는구나,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왜 대상을 교원으로 합니까? 교육개혁을 하려면 내용을 갖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경제적 논리로 IMF니까 다 참자, 이것은 누차 본위원이 통계까지 다 발표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논리에 교육은 이 교원정년 단축하는 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뜻으로 말씀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 주셨는데 이견이 없는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4항은 여러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사회회의와 소위원회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出席政府委員

教育部

次	官	趙	宣	濟
企劃管理室長		金	成	東
學校政策室長		任	東	權
平生教育局長		金	容	炫
學術研究支援局長		鄭	相	煥
教育環境改善局長		李	基	雨
教育情報化局長		李	承	茂

○政府側參席者

教育部

教員政策審議官	金	光	祚
---------	---	---	---

【報告事項】

○意見提示

교원노조법제정에관한청원

(12월14일 方鏞錫 의원 외 18인의 소개로 제출)

환경노동위원장으로부터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 최종심사전까지 의견을 제시함

○出席委員

咸鍾漢	金貞淑	朴承國	李相賢
李源馥	李在五	黃祐呂	盧武鉉
薛勳	朴範珍	鄭東泳	鄭喜卿
金日柱	金許男	金顯煜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鄭富永
專門委員	尙元鍾

○出席國務委員

教育部長官	李海瓚
-------	-----